

1. 5-06-0600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(상환청구권 있음)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>여신거래신청서(기업용) (포괄한도용) (생략)</p> <p>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 (생략)</p> <p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>제 1 조~제 8 조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 - 상환청구권 있음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 (좌동)</p> <p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좌동)</p> <p>제 1 조~제 8 조 (좌동)</p> <p>제 9 조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년)내에서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1.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.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</p>	<p>명칭 변경</p> <p>업무편람 LB28 개정 에 따라 여신거래신청서 별도 징구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과의 통합에 따른 조항 신설</p>

<p>제 9 조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p> <p>(생 략)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(전자방식의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생 략)</p> <p>(신 설)</p>	<p>경우</p> <p>3.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</p> <p>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 년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관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10 조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p> <p>(작 동)</p> <p>(삭 제)</p> <p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작 동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76 957 1747 1256"> <tr> <td data-bbox="976 957 1568 1256"> <p>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</p> </td> <td data-bbox="1568 957 1659 1256"> <p>본 인</p> </td> <td data-bbox="1659 957 1747 1256"> <p>(인)</p> </td> </tr> </table>	<p>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</p>	<p>본 인</p>	<p>(인)</p>	<p>체하</p> <p>추가약정서 제 9 조 편입으로 인한 삭제</p> <p>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른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내용 및 판매기업의 확인(자필기재) 절차 신설</p>
<p>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</p>	<p>본 인</p>	<p>(인)</p>			

2. 시행일 : 2015년 4월 30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 : 시행일 이후 신규 약정고객부터 적용